
[측량담당자 감사요청 건]

특정감사 결과보고

2016. 9.

목 차

I. 감사실시 개요	1
1. 감사배경 및 목적	1
2. 감사대상	1
3. 감사기간 및 인원	1
4. 감사 중점사항	1
II. 감사결과	2
1. 총평	2
2. 지적사항 총괄	3
3. 조사내용	3
4. 감사심의조정위원회 심의결과	6
5. 감사자 의견	7
6. 행정사항	7
III.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	7
[붙임] 측량담당자 감사요청에 대한 회신문	8

1. 감사배경 및 목적

이번 특정감사는 인접토지 옹벽이 침범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도면 (1:330) 발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발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 감사관실로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우리 공사 감사실로 이첩되어 경위를 조사한 후 부당함을 해소 하고자함

□ 감사요청 개요

- 감사요청: 김** →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→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
- 이 첩: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→ 공사 감사실[2016. 8. 9.(화)]
- 제 목: 『측량담당자 감사요청』
- 내 용:
 - 인접지 옹벽이 침범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축척 1:330 참고도면 발급요청

2. 감사대상

- □□지역본부 ㅎㅎ지사 국토정보직4급 김○○

3. 감사기간 및 인원

- 감사기간: 2016. 8. 18.(목) / 1일간
- 감 사 반 : 감사실 국토정보직4급 정○○ 등 2인

4. 감사 중점사항

이번 감사는 국토교통부 감사관실에 접수된 “민원인 주장과 1:330 참고도면 발급 경위 ”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집중 점검하였음.

- 민원인 주장 및 요청사항 확인
- 민원인이 현황도면을 확대하여 확인하게 된 경위
- 참고도면(1:330)을 발급한 경위와 현황선을 표시하지 않은 이유
- 지역본부 민원담당 직원의 답변 내용에 대한 경위
- 그밖에 민원 내용에 대한 확인 등

II

감사결과

1. 총평

- 민원인(김** 남편 이**)은 인접지(□□ □○시 □ㄴ읍 ○□리 44*-2)에서 건축 부지를 성토(2~3m)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동의를 구하여 이를 거부하였지만 성토 후 공사를 하여 준공이 난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음
- 준공 난 것을 취소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용벽 일부가 침범했다고 판단하고 지적현황측량을 신청하였으나 용벽선이 지적선과 거의 일치하여 성과도면상으로는 침범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으며
- 지적측량결과부 안에 있는 참고도면 또한 침범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자 참고도면에 있는 적색선이 지적선에 가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고의로 침범한 현황선(적색)을 삭제한 후에 발급했다고 민원을 제기함
- 참고도를 1:330로 발급해 줄 수 없다면 1:1200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용벽이 침범한 것을 글로 써서 발급해 달라고 요구함(8. 18. 면담)
- 참고도면은 성과도 작성 파일에서 그림파일로 자동으로 변환되며 축척이나 현황선을 작업자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으며

- 검은색 지적선이 위로 표현되어 현황선(적색)이 대부분 가려져서 출력되었으나 현황선을 삭제하거나 색깔을 변경해서 변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조사됨

2. 지적사항 총괄

(단위 : 건)

구분	계	행정상조치				재정상조치		신분상조치			현지 처분	제도 개선	모범 사례 (건수)
		통보	시정	개선	권고	회수	지급	중징계	경징계	문책			
건수	0	0	0	0	0	0	0	0	0	0	0	0	0

3. 조사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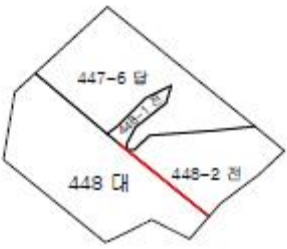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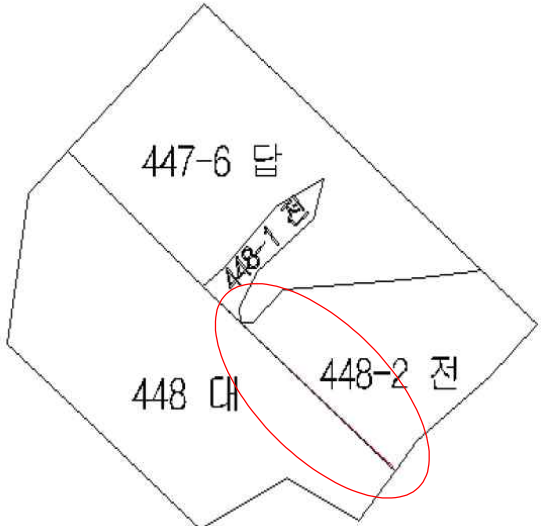
□ 참고도면(1:330) 발급 관련

- ‘지적측량결과부’에 있는 참고도면은 측량정보처리시스템(SIP)에서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큰 필지는 축소하고 작은 필지는 확대 되도록 되어 있으며
- 참고도면은 성과도용 파일을 작성한 후 참고도면으로 내보내기를 하면 그림파일로 자동 변환되어 작성되며 축척이나 선 변경은 작업자가 별도로 변경 할 수 없게 되어 있음
- 참고도면의 축척은 민원인이 지사에서 1:300이라고 했더니 담당 팀장이 1:330이라고 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사결과 참고도면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변환 되는 것으로서 참고도면을 만들기 위해 대상 필지의 범위를 선택할 때 마다 드래그 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따라서 참고도면의 축척은 매번 다를 수 있음

- 또한 이것을 알고 있는 담당팀장이 참고도면의 축척이 1:330이라는 얘기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얘기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
- 지적선과 옹벽현황선이 거의 일치하는 관계로 아래 그림과 같이 참고도면에서도 두 선을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을 민원인은 현황선을 삭제하여 참고도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됨

* 조사과정에서 직접 참고도면으로 변환과정을 확인함

☑ 발급한 성과도와 참고도면

지적현황측량성과도	참고도면
	

- 결재가 끝난 ‘지적측량결과부’ 는 내부 시스템(SIMC)에 등록이 되어 있어 측량을 신청한 고객이 ‘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(c4c.lx.or.kr)’ 에 회원 가입 후 다운 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이 원하는 참고도면은 ‘지적측량결과부’ 에서 확인 할 수 있음

□ 용벽 저축(1.1cm) 관련 사항

- 담당 팀장은 민원인의 집요한 요구에 따라 컴퓨터 화면을 최대한 확대(축척:0)해 주었으며 그 결과 민원인은 용벽 현황선이 지적선 중심을 1.1cm 민원인 토지(44*번지)쪽으로 넘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을 요구하고 있음
- 그러나 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 제41조(경계의 제도) 제1항에 ‘경계는 0.1mm 폭으로 제도한다.’ 고 되어 있으며 축척 1:1200지역에서 지상에서의 지적경계선 폭은 12cm로서 1.1cm는 경계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경계선 내에 중복된 것임

□ 경계침범에 대한 구청의 답변 요청 회피

- 민원인은 구청에서 ‘경계 침범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구청 관계자와 확인한 사실에 대한 문서 답변을 읍지사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읍지사에서는 사실관계를 계속 은폐하며 공개거부를 하고 있다.’ 고 주장
- 조사결과 2016. 6. 20.에 ○○구청 건설교통과에서 ‘용벽이 44*번지의 경계 침범여부에 대하여 6. 23.(목)까지 회신요청’ 이 있었으며 읍지사에서는 2016. 6. 23.(목)에 ‘「지적측량시행규칙」 제18조(세부측량의 기준 및 방법 등)을 근거로 측량결과도는 그 토지가 등록된 도면과 동일한(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발급) 축척으로 작성할 것으로 정해져 있어 경계침범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음’ 으로 회신하였음

□ 본부 민원담당자(국토정보직3급 김○○) 답변 관련

- 민원인은 내부감사 요청서에서 ‘□□지역본부 수석팀장 김○○은 잉크가 번져 붉은색이 흑색으로 표시되어 발급된 것이며 우리 조직에서는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.’ 라고 함
- 상기 민원담당 직원은 경위서에서 민원인에게 위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민원인 면담에서 민원담당자가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전달하자 민원담당자가 민원인의 지인에게 전화로 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여 이후 민원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

□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옹벽 침범 사항 글로 작성 발급 요청

- 민원인과의 면담에서 민원인이 최종적인 요구사항은 1:330도면 발급이 어렵다면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‘44*-2번지에서 시공한 옹벽이 민원인 토지(44*번지)로 침범했다.’ 는 것을 글로 작성해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함
- 「지적업무처리규정」 제28조(측량성과도의 작성방법)에 측량결과를 글로 작성해서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

4. 감사심의 조정위원회 심의 결과

- 회의일시: 2016. 8.31.(수) 10:00 ~ 11:00
- 회의장소: 감사실
- 출석위원: 16명
- 의결사항
 - 참고도면(1:330) 발급 및 1:1200성과도에 옹벽침범 내용 작성 후 발급
 - ☞ 관련 규정이 없는 관계로 발급 불가

5. 감사자 의견

- 민원인은 인접지(44*-2) 토지 소유자가 시공한 옹벽이 본인의 토지에 침범했다는 증빙자료를 이용하여 준공을 취소시키고자 하고 있으나
- 지적현황측량 결과 옹벽이 침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원인이 요구하는 1:330 참고도면은 임의로 작성할 수도 없으며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침범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할 관련 규정이 없음
- 따라서 당초 작성된 ‘지적측량결과부’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침범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할 관련 규정이 없음으로 회신한 후 종결하고자 함.

6. 행정사항

- (조치사항) 조사 결과에 대해 민원인에게 회신(우편)
- (감사결과 공시) 공공감사정보시스템, e-감사시스템, 홈페이지 공시

Ⅲ

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

- 처분요구 없음

【붙임】 측량담당자 감사요청에 대한 회신문 1부. 끝.

【붙임】

□ 측량담당자 감사요청에 대한 회신문

수 신 : 김○○ 귀하(**북도 □□시 ○○구 □□읍 ㅎㅎ리 44*)

제 목 : 측량담당자 감사요청에 대한 회신

1. 항상 우리공사의 발전을 기원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2. 고객님께서 국토교통부 민원정보시스템에 □□ □□시 ○○군 □□읍 ㅎㅎ리 44*번지 지적측량담당자의 내부감사를 요청하는 민원은 우리공사로 이송되어 2016.8.18. 현지를 방문 고객님과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.

아 래

가. 지적측량성과도는 지적측량결과도에 의거 작성된 도면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제18조제1항2호에 의해 그 토지가 지적공부에 등록(축척 1200분의1)된 동일한 축척으로 성과도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나. 고객님께 발급한 참고용 도면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발급한 도면으로 축척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참고도면 하단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다. 참고도면이 필요하신 경우 지적측량의뢰인이 “지적측량바로센터”(c4c.lx.or.kr)에 회원가입 후 지적측량결과부 온라인열람에서 지적측량결과부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

라. 고객님께서 내부 감사 요청하신 지적측량성과 위변조 및 은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업무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